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6가단500161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17. 5. 16.

판결 선고 2017. 7. 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1,031,657원 및 그 중 80,994,207원에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3. 21.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2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5. 7.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피고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5. 8. 10. 접수 제426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치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7.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5. 8. 10. 접수 제42669호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미 피고 회사가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지 두 달 여 만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피고 B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여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만족을 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며, 이에 비추어 피고 B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 피고 C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을다 제1, 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 피고 C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있다.

(1)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D에게 중개를 의뢰하였고, 피고 C는 딸의 직장에서 가까운 집을 알아보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 광고를 한 D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았다.

(2) 피고 C는 2015. 7. 7.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9,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일에,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5. 7.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을다 제5호증),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피고 C는 2015. 7. 20.경까지 잔금을 모두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2015. 7. 20. 피고 B와 합의하여 8,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억 원은 2015. 9. 7.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변경하였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변경계약서(을다 제1호증)에 계약일자가 2015. 7. 7.로 기재된 것은 원 계약일자가 2015. 7. 7.이어서 그대로 기재하였기 때문이고, 특약사항에 '2015. 7. 20.자 계약서의 약정내용, 약정일자보다 본 계약서가 우선한다'는 기재는 2015. 7. 7. 작성된 원 계약서(을다 제5호증)보다 위 변경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려던 것인데, 착오로 날짜를 2015. 7. 20.로 기재한 것뿐이다.

(5) 변경계약 후 피고 B가 2015. 7. 27.경 D를 통하여 피고 C에게 '사업상 잔금기일에 서류를 맞출 수 없을 것 같으니 등기를 먼저 가져가라'고 제의하여 잔금기일 이전인 2015. 8. 10.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

(6) 피고 C는 위 변경계약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 출처는 종전 전세계약 만료에 따라 돌려받은 전세보증금과 대출받은 금원이고, 피고 C는 2015. 9. 7. D에게 중개수수료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을다 제9호증의 2).

(7) 피고 B와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한 사이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계선

별 지

부 동 산 목 록

1. 서울특별시 중구 대 132㎡
중 80 분의 36 지분
2. 서울특별시 중구 제1호
연와조평옥개 평가건주택 43.44㎡ 끝.

청 구 원 인

1.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2. 원고는 2014. 8. 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번호 E, 보증원금 금80,000,000원, 보증기한 2015. 8. 7.(차후 2016. 8. 5.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100%)를 발급해 주어, 위 피고가 2014. 8. 2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8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습니다.
3.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위 피고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12. 12. 1. 이후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 부채채무까지도 원고에게 지급하고, 위 피고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당하거나, 회생절차 내지 파산절차를 신청하거나, 폐업 내지 영업을 정지하거나, 조세공과를 체납하거나, 당좌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원고는 위 피고에게 별도의 통지나 최고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구상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4.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구상금채무를 연대 보증하였습니다.
5. 그 후, 피고 A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5. 8. 7. 이래 이자연체 사태에 빠졌다가 결국 2015. 9. 8. 기한의 이익을 상실당하는 대출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2015. 12. 22. 중소기업은행에게 금80,994,207원(원금 80,000,000원 + 이자 994,207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6.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금 37,450원입니다.
7. 그렇다면,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81,031,657원(대위변제금 80,994,207원 + 법적절차비용 37,450원) 및 그 중 금80,994,207원에 대하여는 2015. 12. 22.부터 소장부분 최후 송달일까지는 원고 소정의 연 1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 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구상금채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